**중국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세관총서 제249호령)**

**2021.4.12 발표, 2022.1.1 실시**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 동식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식품안전법》（이하 《식품안전법》이라 약칭함） 및 그 실시조례, 《중국해관법》 《중국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국수출입 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국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국농산물품질안전법》과 《국무원의 식품 등 제품 안전감독관리에 대한 특별규정》 등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아래 활동에 종사 시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출입식품의 생산경영활동

(2) 해관은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 및 그 수출입식품 안전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입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경영활동은 해관총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조 수출입식품 안전업무는 안전제일, 예방위주, 리스크관리, 전과정 통제, 국제적 공조(共治)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4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수출입식품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수출입식품 생산경영자는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 및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따라 수출입식품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받아 수출입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와 대중에 책임지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해관총서는 전국의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해관은 관할구역의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해관은 정보화수단을 활용하여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7조 해관은 수출입식품안전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식품안전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과 지식의 보급업무를 전개한다.

해관은 식품안전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국내외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등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구조를 조성한다.

제8조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해관 요원은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해야 한다.

**제2장 식품수입**

제9조 수입식품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특수요구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협정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식품안전 국가기준이 아직 없는 식품의 수입은 국무원 위생행정기관이 공포한 일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련 기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신규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기관의 신규 식품원료 위생행정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10조 해관은 수출입상품 검사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합격평정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합격평정 활동에 포함되는 내용: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지역)(이하 외국(지역)이라 약칭함)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평가 및 심사, 외국 생산기업의 등록(注册), 수출입기업의 신고(备案)와 합격보증, 수입동식물 검역승인, 부속되는 합격증명검사, 서류(单证)심사, 현장검증, 감독 및 샘플링, 수입 및 판매 기록검사 및 각 항목의 조합.

제11조 해관총서는 외국(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과 식품안전상황에 대하여 평가 및 심사를 할수 있으며, 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검사검역 요건을 확정한다.

제12조 다음 상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외국(지역)에 대해서 평가 및 심사를 할 수 있다.

(1) 외국(지역)이 중국으로 처음 수출하는 어떤 유형(종류)의 식품 신청.

(2) 외국(지역)의 식품안전, 동식물검역 법률법규, 조직기구 등의 중대한 조정

(3) 외국(지역)의 관할기관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어떤 유형(종류)의 식품에 대한 검사검역 요구에 중대한 조정상황 발생.

(4) 외국(지역)에서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발생 또는 식품안전사고 발생.

(5) 해관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고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

(6) 기타 평가 또는 심사가 필요한 상황.

제13조 외국(지역)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평가 및 심사에는 주로 다음 내용의 평가 및 확인이 포함된다.

(1) 식품안전, 동식물 검역 관련 법률법규;

(2) 식품안전 감독관리 조직기구;

(3) 동식물 전염병의 유행상황 및 예방 통제;

(4) 병원성 미생물, 농업용 동물용의약품 및 오염물질 등 관리 통제;

(5) 식품 생산가공, 운송 및 보관의 안전 위생 통제;

(6) 수출식품 안전 감독관리;

(7) 식품 안전방호, 추적 및 리콜 시스템;

(8) 조기경보 및 응급체계;

(9) 기술지원능력;

(10) 기타 동식물 전염병 및 식품 안전과 관련된 상황.

제14조 해관총서는 자료심사, 화상검사, 현장검사 등 형식 및 조합을 통해 평가와 심사를 수행할 전문가를 조직할 수 있다.

제15조 해관총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가 제출한 신청자료, 서면평가 설문조사 등 서류에 대해 심사하며, 심사내용에는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유효성이 포함된다. 자료심사 상황에 근거하여 해 관총서는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기관에 보충, 미비 정보 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자료심사가 통과된 국가(지역)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에 대해 화상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수행할 전문가를 조직할 수 있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기관 및 관련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관련 국가(지역)는 평가와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제16조 평가 및 심사중인 국가(지역)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평가 및 심사를 종료하고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설문지 접수 12개월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2) 해관총서로부터 정보 및 자료 보완 통보 접수 3개월 내에 요구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또는 식품안전사건이 돌발한 경우;

(4) 중국측이 화상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완료하는데 협력하지 않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완료하지 못한 경우;

(5) 평가 및 심사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전 조항 제1, 2항 상황인 경우에는 관련 국가(지역)의 주관기관이 특별이유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해관총서가 새로 정한 기한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평가 및 심사 완료후 해관총서는 평가와 심사 접수중인 국가(지역) 주관기관에 평가 및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8조 해관총서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생산기업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등록괸 기업리스트를 공표한다.

제19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이하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이라 약칭함)은 해관총서에 신고(备案)해야 한다.

식품수입상은 해당 소재지 해관에 신고(备案)해야 한다.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은 신고 시 제출자료의 진실성, 유효성을 책임져야 한다.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 리스트는 해관총서에서 공표한다.

제20조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의 신고(备案)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해관이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의 신고정보 오류 또는 신고내용이 적기에 변경되지 않음을 발견할 경우 규정된 기한내에 정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1조 식품수입기업은 식품수입 및 판매기록제도를 마련하여 식품명칭, 순함량/규격, 수량, 생산일자, 생산 또는 수입 로트번호, 유통기한, 외국수입기업과 구입자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납품일자 등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증빙의 보관기한은 식품 유통기한 만료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유통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판매후 2년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22조 식품수입기업은 외국수출기업, 외국생산기업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아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1) 식품안전 리스트 통제조치 상황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2) 식품이 중국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함을 보증한다.

제2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식품수입기업의 심사활동 상황에 대해 감독 조사를 하며 식품수입기업은 적극 협조하고 관련 상황과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해관은 리스크 관리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지정항구로 수입, 지정된 단속장소에서 검사받도록 할 수 있다. 지정항구, 지정단속장소 리스트는 해관총에서 공표한다.

제25조 식품수입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식품 수입 시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26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입국검역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27조 해관은 수입동식물 검역승인이 필요한 수입식품에 대해 검역승인관리를 실시한다. 식품수입기업은 무역계약 또는 협의서 체결 전에 수입동식물검역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28조 해관은 감독관리 수요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현장검증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운송수단, 보관장소가 안전위생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내.외포장의 라벨내용, 화물의 실제상황이 신고정보 및 부속서류와 일치하는지;

(3) 동식물성 식품, 포장물 및 포장재가 《수출입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22조에 규정된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4) 내.외포장이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오염.파손.침습.침투 유무;

(5) 내.외포장의 라벨, 표시 및 설명서가 법률, 행정법규, 식품안전 국가기준 및 해관총서가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6) 식품 감관성상이 해당 식품에 있어야 할 성상에 부합하는지 여부

(7) 냉동냉장식품 신선도, 중심온도가 요구에 부합하는지, 병변이 있는지, 냉동냉장 환경온도가 관련 기준 요구에 부합하는지, 냉각체인 온도조절설비 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온도기록이 요구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경우 찌기(蒸煮)시험 수행.

제29조 해관은 연간 국가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계획과 특별 수입식품 안전감독 샘플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0조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는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설명서가 있어야 할 경우 중국어 설명서도 있어야 한다.

수입되는 냉동 육류제품에 대해서는, 내.외포장에 견고하고 명확하게 분별이 용이한 중영문 또는 중문과 수출국가(지역) 문자로 표시되어야 하며 아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산지국가(지역), 품명, 생산업체 등록번호, 생산 승인번호. 겉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산지(구체적으로 주/성/시까지), 목적지, 생산일 자, 유통기한, 저장온도 등의 내용을 표시해야 하고,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국가(지역)의 공식 검역표시를 표기하여야 한다.

수입 수산물의 경우, 내.외포장에 견고하고 명확하게 분별이 용이한 중영문 또는 중문과 수출국가(지역)의 문자 표시가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승인번호와 보존조건, 생산방식(해수조업, 담수조업, 양식), 생산지역(해수조업지역, 담수조업 국가 또는 지역, 양식제품 소재국가 또는 지역), 모든 관련 생산가공업체(어획선, 가공선, 운송선, 독립 냉동창고 포함) 명칭 및 등록번호 및 주소(구체적으로 주/성/시까지),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

수입 건강식품, 특수식이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최소판매포장 위에 인쇄해야 하며 부착해서는 안된다.

수입식품의 내.외포장은 특수표시규정이 있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입식품은 항구 도착 후 해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동이 필요시 해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정 또는 승인받은 장소는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32조 대량 산적(散装) 수입식품은 해관 요구에 따라 하역항구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제33조 수입식품은 해관의 합격평가에 통과된 후 수입이 허용된다.

수입식품이 해관의 합격평가에 불합격인 경우 해관에서 불합격증명서를 발급하며 안전·건강·환경보호와 연관된 항목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관에서 식품수입기업에 파기 또는 반송을 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타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기술처리 후 합격평가 요구에 부합한 경우 수입을 허용한다. 관련 수입식품을 규정한 시간내에 기술처리를 완료할 수 없거나 기술처리 후 여전히 불합격인 경우에는 해관에서 식품수입기업에 파기 또는 반송을 명한다.

제34조 해외에서 식품안전사건이 발생하여 중국내 식품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거나 또는 해관이 수입식품 감독관리 실시과정에서 부적합 수입식품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기타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경우 해관총서와 권한을 부여받은 직속해관은 리스크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수입식품에 대해 샘플링비율을 높이는 등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해관은 앞 조항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해 샘플링비율을 높이는 등 통제조치 실시후 부적합 수입식품을 재발견한 경우 또는 수입식품에 중대한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관총서와 권한을 부여받은 직속해관은 식품수입기업에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이 발급한 건별 검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관은 식품수입기업이 제공한 검사보고서에 대해 조사 확인해야 한다.

제35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총서는 리스크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해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출국가(지역)에서 중대한 동식물 전염병 발생, 또는 식품안전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 수입식품이 검역할 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검역할 전염병 매개체이고 효과적인 위생처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해관이 본 방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통제조치를 실시한 수입식품에서 안전, 건강, 환경보호 항목이 부적합함을 다시 발견한 경우

(4) 외국생산기업의 중국 관련 법률법규 위반 정황이 엄중한 경우

(5) 관련 식품에 중대한 안전 위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가 있는 경우

제36조 수입식품 안전위험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춘 경우, 해관총서와 권한을 부여받은 직속해관은 다음의 방식으로 해당 통제조치 해제할 수 있다

(1) 본 방법 제34조 제1항 통제조치를 실시한 식품의 경우 규정된 기간과 로트(批次)내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을 시 리스크평가를 기반으로 해당 통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2) 본 방법 제34조 제2항 통제조치를 실시한 식품의 경우 수출국가(지역)에서 예방조치를 취하였으며 해관총서의 리스크평가를 통해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동식물 전염병 발생 위험을 통제하거나 또는 해당 통제조치 실시일로부터 규정된 시간, 로트내에서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 해관은 리스크평가를 기반으로 해당 통제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3)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 시행된 식품의 경우, 수출국가(지역)의 주무기관이 리스크통제 조치를 취하였고 해관총서의 평가를 거쳐 요건에 부합하면 일시 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수입재개된 식품에 대하여 해관총서는 평가상황에 따라 본 방법 제34조에서 규정한 통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7조 식품수입기업은 수입식품이 법률, 행정법규와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인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 603조와 제9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입, 판매 및 사용을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보하며 리콜 및 통보상황을 기록하고 식품리콜, 통보 및 처리현황을 소재지의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식품수출**

제38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해당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기준 또는 계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특수요구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협정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에 기준이 없고 계약에서도 요구하지 않았고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도 관련 요구가 없다면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해당 수출식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39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수출식품 감독관리에는 수출식품원료 재배.양식농장 등록,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록, 기업심사, 서류심사, 현장검증, 샘플링 감독, 항구검사, 국외통보검사 및 각 항목의 조합 등이 포함된다.

제40조 수출식품원료의 재배.양식장은 소재지 해관에 등록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원료 재배.양식장 등록명단을 일괄 공표하며 등록절차 및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1조 해관은 법에 따라 자료심사, 현장검사, 기업검사 등 방식으로 등록된 원료의 재배.양식장을 감독한다.

제42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절차 및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3조 해외국가(지역)에서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식품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해관총서에 추천을 요구할 경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소재지 해관은 1차 심사 후 해관총서에 보고한다.

해관총서는 기업 신용, 감독관리 및 소재지 해관의 1차심사 상황을 종합하여 대외추천 등록업무를 전개하며 대외추천 등록절차 및 요구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한다.

제44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이력추적이 가능한 식품안전 위생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식품안전 위생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수출식품의 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법규, 수출식품 생산기업 안전위생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수입국(지역)의 관련 법규 및 관련 국제조약, 협정에 특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요구에도 부합해야 한다.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공급업체 평가제도, 수입품 검사기록제도, 생산기록부제도, 출하검사기록제도, 수출식품 추적제도와 부적합식품 처분기록제도 등을 비치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기한이 식품 유통기한 만료후 6개월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유통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기한이 2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제45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수출식품의 포장과 운송방식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6조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운송포장에 생산기업 등록번호, 제품명, 생산 승인번호와 생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국(지역) 또는 계약에 특수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품의 이력추적 보장을 전제로 직속해관의 동의를 거쳐 수출식품 생산기업은 전 조항에서 규정한 표시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해관은 관할구역내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식품안전 위생통제 시스템 운영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감독검사는 상시 감독검사와 연간 감독검사가 포함된다.

감독검사는 자료심사, 현장검사, 기업검사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수 출식품의 해외통보 검증, 감독 샘플링, 현장검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수출식품은 법에 따라 산지 해관에서 검험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대외무역 편이와 수출식품 검험검역 업무수요에 따라 기타 장소를 지정하여 검험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 수출식품 생산기업, 수출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및 해관총서 규정에 따라 산지 또는 집산지(组合地) 해관에 수출신고 전 단속신청을 해야 한다.

산지 또는 집산지 해관은 식품수출 신고 전 단속관리 신청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검험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수출식품에 대해 현장검사와 감독 샘플링을 실시한다.

제50조 해관은 연간 국가수출식품 안전감독 샘플링 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제51조 수출식품이 해관 현장검사 및 감독 샘플링을 거쳐 요구에 부합할 경우 해관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수출을 허용한다. 수입국(지역)이 증서의 형식과 내용에 변경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증서 형식과 내용에 대해 변경할 수 있다.

수출식품이 해관 현장검사 및 감독 샘플링을 거쳐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관에서 수출기업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기술처리를 할 수 있는 수출식품은 기술처리 후 수출을 허용하며 기술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기술처리 후에도 여전히 부적합인 식품은 수출을 불허한다.

제52조 식품수출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식품을 수출 시 법에 따라 해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제53조 해관은 항구에서 수출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부적합 시 수출을 불허한다.

제54조 안전문제로 국제조직, 외국정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출식품에 대해 해관총서는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요에 따라 감독 샘플링비율 조정 실시, 식품수출기업에 자격을 갖춘 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지시, 해외 정부기관에 대한 등록추천 철회 등 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55조 수출식품에 안전문제가 존재하여 인체건강과 생명안전에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하여 피해 발생을 피하거나 감소해야 하는 동시에 소재지 해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6조 해관은 수출식품 감독관리 실시과정에서 안전문제 발견 시 동급 정부 및 상급 정부 식품안전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57조 해관총서는 《식품안전법》 제100조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품 안전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정보 관리제도를 수립한다.

각급 해관은 본 관할지역내 및 상급 해관이 지정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의 수집과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관할지역의 지방정부, 관련 부서, 기관과 기업에 통보한다. 통보 정보가 타 지역과 연관된 경우 해당 지역 세관에도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해관에서 수집·취합한 수출입식품 안전정보에는 《식품안전법》 제100조 규정 내용 이외에 해외식품의 기술적 무역조치 정보도 포함한다.

제58조 해관은 수집된 수출입식품의 안전정보에 대하여 리스크 조사.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리스크 조사.평가 결과에 관련 통제조치를 정한다.

제59조 국내외에서 식품안전사건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여 수출입식품 안전에 영향을 준 경우 또는 수출입식품에서 엄중한 식품안전문제를 발견한 경우 직속해관은 즉시 해관총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관총서는 상황에 근거하여 조기에 경보하고 해관 시스템내에서 리스크 경보 통보를 게시하고 국무원 식품안전 감독관리, 위생행정, 농업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 시 소비자에게 리스크 경고알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해관총서에서 리스크 경고알림을 게시한 경우 리스크 경고알림 요구에 따라 수출입식품에 대해 본 방법 제34조, 35조, 36조와 54조에서 규정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0조 해관은 연간 국가 수출입식품안전 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며 수출입식품 중 식품매개질환, 식품오염과 유해요인에 대한 모 니터링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한다.

제61조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사건이 중국내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평가를 통해 통제불능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관총서는 국제통용법을 참조하여 직접 해관시스템에 리스크 조기경보를 게시하거나 또는 소비자에게 리스크 조기경고알림을 게시하고 본 방법 제34조, 35조와 36조에서 규정한 통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2조 해관은 수출입식품안전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을 제정 및 실시한다.

제63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안전 감독관리직책을 이행 시 이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생산경영장소에 입소하여 현장검사 실시

(2) 생산경영되는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실시

(3) 계약서,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 열람, 복사

(4)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증거가 있거나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을 차압.압수

제64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기업에 대해 신용관리를 실시한다.

제65조 해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식품 생산경영기업 및 등록원료 재배.양식장에 대해 조사, 검사를 실시한다.

제66조 국경통과식품(过境食品)은 중계화물(过境货物)에 대한 해관총서의 단속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국경통과식품은 국경통과기간에 해관의 승인없이 포장을 개봉하거나 운반구에서 하역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기한내에 운반하여 국경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67조 수출입식품 생산경영기업이 해관의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출입상품 재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해관은 재검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1) 검사결과에서 미생물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2) 재검사 백업샘플이 유통기한을 초과한 경우

(3) 다른 이유로 인해 백업샘플이 재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5장 법률책임**

제68조 식품수입기업이 등록한 내용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해관에 변경 수속을 하지 않아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해관에서 경고에 처한다.

식품수입기업이 등록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관에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 국내 수출입식품생산경영기업이 해관의 수출입식품 안전검사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질의접수 및 서류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답변내용과 제공한 서류가 실제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경고 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 해관이 수입사전포장식품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발견한 수입사전포장식품에 중국어 라벨 미부착 또는 중국어 라벨이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식품수입기업이 해관의 요구를 거부하여 폐기·반송 또는 기타 기술처리를 하지 않을 시 해관에서 경고에 처하거나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 해관의 허가 없이 수입식품을 해관이 지정 또는 승인한 장소에서 가져간 경우 해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아래의 위법행위가 《식품안전법》 제129조 제1항 (3)에 규정된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수출한다”는 규정에 속한 경우, 해관에서 《식품안전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해관의 감독 샘플링을 거쳐 증빙이 기 발급된 수출식품을 무단으로 교체한 경우

(2) 가짜를 섞어서, 가짜로 진짜를 속여서, 불량품을 좋은 제품으로 속여서 수출하거나 또는 불합격 수출식품을 합격 수출식품으로 사칭한 경우

(3) 수출식품 생산기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생산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4) 등록요구가 있는 국가(지역)에 등록을 취득하지 않은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식품을 수출하거나 이미 등록을 취득한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등록범위 이외의 식품을 수출한 경우

(5) 수출식품 생산기업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등록된 재배.양식장의 원료를 수출식품에 사용한 경우

(6) 수출식품 생산경영기업에 《식품안전법》 제123조, 제124조, 제 125조, 제126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수출식품이 수입국(지역)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73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74조 해관의 특수 단속구역, 보세 단속장소, 시장 구매, 국경지대 소액무역 및 변경지대 주민의 상호무역의 수출입식품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5조 우편, 택배, 크로스보더와 여객휴대 방식으로 진행하는 수출입식품의 안전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6조 샘플.선물.증정품.전시품.원조 등 비무역적인 식품, 면세경영 식품, 중국주재 외국공관 및 주재원이 출입국 시 공용.자체사용 식품, 외국주재 공관 및 주재원이 공용.자체사용 식품, 외국주재 중국기업 인원이 자체사용하는 식품의 감독관리는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다.

제77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수출입식품 생산경영기업에는 중국 경내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생산기업,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 수출식품 생산기업, 수출기업 및 관계자 등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수입식품의 외국생산기업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생산.가공.저장기업 등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칭하는 수입식품의 수출입기업에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수출기업 또는 대리상, 식품수입기업을 포함한다.

제78조 본 방법은 해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79조 본 방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2011년 9월 13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44호령에 따라 발표, 2016년 10월 18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84호,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근거하여 수정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2000년 2월 22일 原 국가검험검역국령 제20호에 따라 발표, 2018년 4월 28일 해관총서령 제238호에 근거하여 수정한 《수출벌꿀 검사검역 관리방법》, 2011년 1월 4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35호에 따라 발표,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수정한 《수출입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1년 1월 4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36호에 따라 발표,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수정한 《수출입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3년 1월 24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52호에 따라 발표,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수정한 《수출입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2017년 11월 14일 原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령 제192호에 따라 발표, 2018년 11월 23일 해관총서령 제243호에 따라 수정한 《수출식품 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은 폐지한다.